

2022년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위·수탁 협약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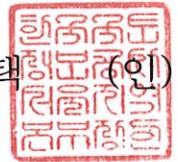
- 위탁 업무명 : 2022년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
- 협약 체결일 : 2022. 1. 4.
- 협 약 기 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
- 위탁 사업비 : 137,177,000 원 (금 일억삼천칠백일십칠만칠천원)
- 협약 당사자

- 위탁자 : 서울특별시

오 세 훈 (인)



- 수탁자 :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이 승 태 (인)

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위탁자” 라 한다)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(이하 “수탁자” 라 한다)에 위탁하는 2022년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위탁업무 내용)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업무는 위탁업무명으로서 하며,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위탁자의 2022년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위탁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른다.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.

제3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의 기간은 2022. 1. 1.부터 2022. 12. 31.까지로 한다.

② 본 협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 체결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

제4조(신의성실 의무)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‘업무수행계획서’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탁사업비 지급)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(선금급)에 의거하여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탁자는 정부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요경비의 지급시기, 규모, 금액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 수탁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하고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관리하며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업무보고 및 정산)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‘2022년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’ 위탁업무 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정산내역서가 첨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안조치)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약의 변경)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,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

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약의 해제 및 해지) ① 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협약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체결된 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업무담당자 변경) ① 수탁자는 협약기간 중 업무담당자의 변경·교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 업무담당자를 부득이하게 변경·교체하는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을 위탁자와 상호 협의한다.

제12조(권리·의무의 양도 제한)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3조(재산권) ① 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.

② 수탁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·무형 재산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, 위탁자의 재산등록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제14조(관계자료의 제출 등)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 추진 현황, 관계 서류의 열람,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- 제15조(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)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·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- 제1조(경과조치) 2021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위·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 중 위·수탁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
- 제2조(협약의 효력)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협약의 해석) 이 위·수탁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제4조(한국국토정보공사의 범위) 이 위·수탁 협약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본사, 지역본부 및 지사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에 따른 조직을 포함한다.

